

광주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0가단5301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이한진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류재규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향미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철, 정재현

변 론 종 결 2022. 3. 29.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D와 피고 C 사이에 2019. 8.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채권 1억 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와 피고 A 사이에 2016. 1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채권 1억 8,000만 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D와 피고 B 사이에 2018. 8.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채권 145,653,468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F’를 운영하던 D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에게 보증서를 각 발급해주었다. D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위 각 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3.경 2019. 3. 8.로 연장되었다가 2019. 3.경 2020. 3. 6.로 연장되었다.

<표>					(단위: 원)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채권자
1차	2016. 3. 10.	H	85,000,000	기업운전 일반자금	2018. 3. 9.	G은행
2차	2016. 3. 10.	I	85,000,000	기업운전 일반자금	2018. 3. 9.	G은행

다.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A에게 2016. 12.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접수 제1087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B에게 2018. 8.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8. 8. 17. 접수 제1441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피고 C에게 2019. 8.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9. 8. 5. 접수 제1358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는 2020. 1. 4.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0. 3. 3. 소외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8. 13. 소외 은행에 위 각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합계 175,296,290원(= 1차 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87,648,145원 + 2차 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87,648,145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1,511,480원을 지출하였다가 303,324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1,208,156원이며, D가 위 각 보증 관련 미지급한 추가보증료는 합계 728,420원이다. 원고는 D에 대하여 합계 177,232,866원(= 위 각 보증 관련 대위변제금 합계 175,296,290원 + 대지급금 잔액 1,208,156원 + 추가보증료 합계 728,420원) 상당의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사건에서, 2021. 2. 23. ①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1억 8,000만 원을, ②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145,653,468원을, ③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1억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카단50393호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2.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추심하거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한민국은 피고들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8, 10, 25, 26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6. 3. 10. D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D가 소외 은행에 위 각 보증서를 제출하며 소외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16. 12.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6. 21. 접수 제1087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에게 2018. 8.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8. 8. 17. 접수 제1441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D가 2020. 1. 4.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20. 8. 13. 소외 은행에 위 각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합계 175,296,290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D에 대하여 합계 177,232,866원 상당의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18. 11. 27. J단체에 대한 한도대출 1,800만 원의 대출금채무(계좌번호 1 생략)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그 외에도 G은행 등에 대한 다수의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여 연체등록이 해제되었으며, D가 2018. 4. 10.까지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1,617,570원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후 D가 위와 같이 연체하고 있던 J단체에 대한 한도대출 1,8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그 연체등록을 해제시켰고²⁾, 2020. 8.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340,188,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8. 6. 21.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일인 2016. 12. 15.로부터 기산하면 무려 3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8. 8. 17.로부터 1년 4개월 이상 지난 2020. 1. 4.에야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7개월 이상 지난 2020. 8. 13.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점, 원고도 피고 A, B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9. 3.경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기한을 1년 정도 연장시켜 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D와 위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위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2016. 3. 10. D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D가 소외 은행에 위 각 보증서를 제출하며

소외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D가 피고 C에게 2019. 8.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9. 8. 5. 접수 제1358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D가 2020. 1. 4.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20. 8. 13. 소외 은행에 위 각 보증 관련 채무원리금 합계 175,296,290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D에 대하여 합계 177,232,866원 상당의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금연체를 이유로 2019. 8. 1.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가 2019. 7. 2.경 및 2019. 8. 3.경 소외 은행에, 2019. 8. 2.경 K에, 2019. 8. 6.경 L은행에 각 채무변제를 연체하였으며, 2018. 4. 10.까지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1,617,570원을, 2019. 2. 10.부터 2019. 7. 10.까지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3,171,690원을 각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D와 위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8. 5.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앞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20. 1. 4.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0. 8. 13. 소외 은행에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와 위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가 채무초과상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8. 5. 자신의 채권자들 중 한명인 위 피고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위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D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D의 경제상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D에게 변제기를 1년 후인 2019. 7. 31.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D가 위 변제기까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8. 5.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다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위 피고에게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D와 위 피고 사이에 2019.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사건에서, 2021. 2. 23.
근저당권자인 위 피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분
바와 같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위 피고는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채권
1억 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

별지

1) 갑 제25호증(배당표) 참조

2) 주문 제2항 기재 경매 당시 위 대출금채무는 남아있지 않다.